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정보통신과’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AI정책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능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능정보화책임관”의 변경 및 지능정보화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시(안 제6조)

○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부시장으로 변경(안 제8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 제8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5. 29. ~ 6. 18.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7.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정보화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2인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정보통신과 ☏ 940-4141
입 안 자	정보통신과장	전 현 정
	정보기획팀장	신 수 경
	담 당 자	임 소 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	제6조(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정보화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2인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 실·국·소·본부장 3명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생략)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 부시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민간·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

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2026. 4.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11., 2026. 4. 23>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삭제 2022.2.11>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7.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8.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2.2.11> <개정 2022.2.11>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2.2.11>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장 제목 개정 2022.2.11>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조 제목 개정 2022.2.11>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종합계획은 국가와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2.2.11>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1>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2.2.11>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2.2.11>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2.2.11>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개정

2022.2.11>

9. 국가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22.2.11>

10.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개정 2022.2.11>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2.11>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도지사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8.2.9, 2022.2.11>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조 제목 개정 2022.2.11>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파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5조의2(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이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수요를 매년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는 주관부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요청에 대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3]

제6조(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 <조 제목 개정 2022.2.11>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2.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후단 신설 2022.2.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1>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2.2.11>

2. 시의 실・국・소・본부장 3명 <개정 2022.2.11., 2024.4.2.>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2.11>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

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11>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시장이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2.2.11>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개정 2022.2.11>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11>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11>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조 제목 개정 2022.2.11>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2.11>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2.2.1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2.11>

1. 지능정보사회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2.2.11>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개정 2022.2.11>

3.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 <개정 2022.2.11>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개정 2022.2.11>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개정 2022.2.11>

8. 정보자원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2.11>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장 제목 개정 2022.2.11>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8.2.9)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행정정보의 수수료)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의 수수료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행정정보의 수수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금

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우

3. 예상외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의 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화교육 추진 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강사를 모집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제17조(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개발 효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 프로그램개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장 제목 개정 2022.2.11>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8.2.9, 조 전문 개정 2022.2.11>

제21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설치된 고가의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1.>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서

시민중심 더큰파주

파 주 시

수신 정보통신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파주022)

1. 정보통신과-9011(2026.05.13)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개정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통보서(2026A경기파주022) 1부. 끝..

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전문위원	권문영	여성정책팀장	이영심	여성가족과장	2026. 5. 15. 한정희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10031 (2026. 5. 15.) 접수 정보통신과-9164 (2026. 5. 15.)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야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4 팩스번호 031-940-4419 / myjihee@korea.kr / 비공개(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경기파주022</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경기도 파주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정보통신과</td></tr>
<tr><td>담당자명</td><td>임소희</td><td>전화번호</td><td>031-940-4141</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5월 13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보통신과)</td><td colspan="4">-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td></tr>
<tr><td rowspan="2">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td></tr>
<tr><td colspan="4">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td></tr>
<tr><td>검토의견
반영계획서</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able>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5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정보통신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시민중심 더큰파주

파 주 시

수신 정보통신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정보통신과-8990(2026. 5. 13.)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2026-22	정보통신과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원안동의

붙임 1. 결과통보서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윤수진	감시2팀장	이선	감사관	유대승	전결 2026. 5. 13.

협조자

시행 감사관-5905 (2026. 5. 13.) 접수 정보통신과-9053 (2026. 5. 13.)

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감사관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840 팩스번호 031-940-4089 / yoon55@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22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정보통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전산7급 임소희
평가결과 통지일	2026. 5. 1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시민중심 더큰파주

파 주 시

수신 정보통신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일부개정안)

1. 정보통신과-8996(2026. 5. 13.)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정보통신과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1부. 끝.

예 산 법 무 과 장

주무관	권성원	규제개혁통계 팀장	김선정	의회법무팀장 대결 2026. 5. 13.	노영진
협조자					

시행 예산법무과-8402 (2026. 5. 13.) 접수 정보통신과-9025 (2026. 5. 1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정보통신과
	담 당	팀장 신수경 담당자 임소희
3. 관련법령 등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 제8조	
4. 주요골자	○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시(안 제6조) ○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부시장으로 변경(안 제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